

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
관한 세부기준(제64조의9제2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
2. 개별기준

위반내용	근거 법령	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	법 제58조 의10제1항 제1호	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취소		
나.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	법 제58조 의10제1항 제2호	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취소		
다.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	법 제58조 의10제1항 제3호	시정명령	시정명령 및 인증마크 사 용정지	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취소
라.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58조 의10제1항 제4호	시정명령	시정명령 및 인증마크 사 용정지	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취소
마.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58조 의10제1항 제5호			
1) 인증마크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		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취소		

2)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		시정명령 및 인증마크 사 용정지	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취소	
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

비고: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기간 및 인증마크 사용정지의 기간은 3개월로 한다.